

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광호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531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3월 29일

발 의 자 : 이광호 의원 (1명)

찬 성 자 : 김정환, 박기재, 박순규, 이준형,
김기덕, 이광성, 최기찬, 김경우,
이병도, 김용연, 이세열, 정진술,
이승미, 이은주, 채유미, 최정순,
이현찬, 김동식 의원 (18명)

1. 제안 이유

-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 및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제29조에서는 장애 차별 금지와 장애인의 참여 환경 조성에 관해서 명시하고 있음.
- 그러나 현행 조례에서 장애인 편견과 차별 소지가 있는 ‘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’로 위원 위촉 해제 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.
- 또한,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이 ‘건설기술자’를 ‘건설기술인’으로 순화하여 건설기술인의 위상을 제고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된 바 이를 반영하는 한편,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- 가. '건설기술자'를 '건설기술인'으로 개정함(안 제3조제2항제4호).
- 나. 장애인 편견과 차별 소지가 있는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를 개정함(안 제11조제1호)
- 나.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미비점을 개정함(안 제1조, 안 제2조, 안 제3조, 안 제6조, 안 제8조, 안 제10조, 안 제 11조, 안 제 12조의2, 안 제14조, 안 제15조).

3. 참고 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및 「건설기술 진흥법」
- 나. 예산 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
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”을 “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”
로, “제60조제2항 의 규정”을 “제60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하고, 같은 조
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”을 “제1항”으로, “동항 제1호 내지 제3호”를 “같
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”로 한다.

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1”을 “어느 하나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
호 중 “「고등교육법」 에”를 “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”로 하며, 같은 항
제3호 중 “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2조 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「비영
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의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건설기술자”
를 “건설기술인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제107조 의 규정”을 “제107조”로 한다.

제8조제2항 본문 중 “제1항의 규정”을 “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2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2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제8조제3항의 규정”을 “제8조제3항”으로, “없는 한”을 “없을 때에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8조제3항의 규정”을 “제8조제3항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1호 중 “심신장애로 인하여”를 “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”로 한다.

제12조의2제4항 중 “구성·운영에 관하여”를 “구성·운영에”로 한다.

제14조제2항 중 “제9조의 규정”을 “제9조”로 한다.

제15조 중 “운영에 관하여”를 “운영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(부교수·조교수를 포함한다)로 재직 중에 있는 자

2. (생략)

3. 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)가 추천하는 자

4.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「국가기술자격법」 등 관련 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

5.·6. (생략)

③ (생략)

제6조(소위원회) ① 위원회는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(이하 "령"이라 한다) 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, 용역, 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~ ⑤ (생략)

제8조(심의요청 및 심의결과 통보

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2조의 -----

4. ----- 건설기술인 -----

5.·6. (현행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소위원회) ① -----

----- 제107조 -----

-----.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심의요청 및 심의결과 통보

축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
2. ~ 5. (생략)

제12조의2(원가분석자문회의) ① ~ ③ (생략)

④ 그 밖에 자문회의의 구성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4조(수당 및 여비 등) ① (생략)

②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5조(위원회 운영세칙) 이 조례의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.

-----.

1.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-----

2. ~ 5. (현행과 같음)

제12조의2(원가분석자문회의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 구성·운영에 -----.

제14조(수당 및 여비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제9조-----

-----.

제15조(위원회 운영세칙) -----

-- 운영에 -----
-----.